


1

금융기관 예금액(자기자금)

제출 증빙 서류	발급 방법
예금잔액 증명서	① 인터넷 बैं킹을 통한 발급 인터넷 बैं킹 접속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발급 계좌 선택 및 발급기준일(또는 조회기간) 설정 후 발급  ②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※ 주의 : 발급일 기준을 당일로 설정 시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/출금 거래 제한.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문의(OTP 및 보안카드 필요 등)

【잔액증명서 예시】



진분  
2020/03/17  
13:32:20  
KST

## 통합잔액증명서

安心서비스

증명서원본  
조회 메뉴에서 아래의 확인번호와 일련번호로 본  
확인증의 원본여부와 유효성을 검증(발급일로부터  
90일 이내) 할 수 있습니다.

확인번호

일련번호

발급번호(영업점용) : \_\_\_\_\_

발급용도: 테스트

예금주·위탁자 (Name of Depositor·Trustee): \_\_\_\_\_

공통상종류 (Type of Account)	주택청약종합저축	계좌/종목·채권 번호(필지) (Account/Reg., and Bond No.)	
금액/평가금액 (Amount / B/A)	KRW	의정서/의정금액 (Decision Check & B/A)	WO
장고회수 (Unit)			
제한사항 (Restrictions)	발급기준일자 압류 또는 질권 해당없음.		
공통상종류 (Type of Account)	보통예금	계좌/종목·채권 번호(필지) (Account/Reg., and Bond No.)	
금액/평가금액 (Amount / B/A)	KRW	의정서/의정금액 (Decision Check & B/A)	WO
장고회수 (Unit)			
제한사항 (Restrictions)	발급기준일자 압류 또는 질권 해당없음.		
공통상종류 (Type of Account)	정기적금	계좌/종목·채권 번호(필지) (Account/Reg., and Bond No.)	
금액/평가금액 (Amount / B/A)	KRW	의정서/의정금액 (Decision Check & B/A)	WO
장고회수 (Unit)			
제한사항 (Restrictions)	발급기준일자 압류 또는 질권 해당없음.		

제출 증빙 서류	발급 방법
주식거래내역서	① 인터넷 뱅킹 : 증권사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발급 인터넷 뱅킹 접속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조회기간 설정 후 발급  ② 고객센터 유선연결 : 상담원에게 직접 발급 신청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수신(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필요)  ③ 영업점 방문  ※ 주의 :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 문의(범용공인인증서 필요 등)
예금잔액증명서	금융기관 예금액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방법 참고

## 【주식거래내역서 예시】

거래일자		격요	종목(관고)번호	거래항목	입출금고	유가관고	예수금	거래점
2020-01-02					4 * 13000 = 52000	4	7,803.03640	고객센터
2020-01-02					7 * 28900 = 202300	0	209,589.03640	고객센터
수수료					9			
거래세					202			
거래농득세					303			
정산금액					201,786			
2020-01-06					20 * 4325 = 86500	20	123,086.03640	고객센터
수수료					3			
정산금액					86,503			
2020-01-06					4 * 13100 = 52400	0	175,356.03640	고객센터
거래세					52			
거래농득세					78			
정산금액					52,270			

제출 증빙 서류	발급 방법
증여세 · 상속세 신고서	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
납세증명서	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→ 민원증명 → 국세증명신청 → 납세증명 신청서 ※ 납세증명서 : 증명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

## 【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】

## 【납세증명서】

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0. 3. 13.>

**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**  
(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
[ ] 기한 내 신고 [ ] 추징신고 [ ] 기한 후 신고

※ 취득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일부)

수증자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③ 거주 구분 [ ] 거주자 [ ] 비거주자
	④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
	⑤ 전화번호 (자·택)	(휴대전화)	① 증여자의 관계
증여자	⑥ 성명	⑥ 주민등록번호	⑥ 증여일자
	⑦ 주소		⑦ 전화 번호 (자·택)
	⑧ 성명	⑧ 사업등록번호	(휴대전화)
세무대리인	⑨ 전화번호 (사무실)	(휴대전화)	⑧ 관리번호

구분	금액	구분	금액
① 증여재산가액		③ 세액공제액 합계	
② 비과세재산가액		④ 납부세액	
과세가액 불산입		⑤ 의금납부세액 공제	
⑩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		⑥ 신고세액공제	
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		⑦ 그 밖의 공제·감면세액	
⑫ 공익신탁 재산가액			
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			
⑭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			
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2항			
⑯ 채무액		⑧ 신고불성실가산세	
⑰ 증여재산가산액		⑨ 납부지연가산세	
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		⑩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	
⑲ 증여세과세가액		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)	
⑳ 배부자		⑪ 자진납부할 세액 (합계액)	
㉑ 증여재산공제		⑫ 납부방법	
㉒ 직계존비속		⑬ 납부및 신청일	
㉓ 그 밖의 친족		⑭ 연부연납	
㉔ 제해순실공제		⑮ 분납	
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)		⑯ 신고납부	
㉕ 감정평가수수료		원금	
㉖ 과세표준액		⑰ 신고납부	
㉗ 과세표준액			
㉘ 산출세액			
㉙ 세대생략가산액			
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)			
㉚ 산출세액계(㉘+㉙)			
㉛ 이자상당액			
㉜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			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1.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(부표) 1부  
2.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

담당공무원 1. 주민등록표등본  
확인사항 2.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 x 297mm (복합지 80g/㎡)

**납세증명서**

※ 복상이 아무런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발급번호	처리기간	증시 (단, 해외이주용 10일)
납세자 인적사항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주소(본점)	
증명서의 사용목적	[ ] 대금수령 [ ]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 [ ] 기타	
증명서의 유효기간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
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(단위: 원)	유예종류	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
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(단위: 원)	위탁자	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

「국세징수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,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**세무서장 직인**

210mm x 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# 현금 등 그 밖의 자금(자기자금)

제출 증빙 서류	발급 방법
<b>소득금액증명원</b>	홈텍스 로그인 → 민원증명 → 국세증명신청 →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) (공인인증필요)  ※ 소득금액 증명원 :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
<b>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</b>	홈텍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기타조회 →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→ 사업자 별 조회 가능  ※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원천징수세액을 영수할 때 사용하는 문서

### 【소득금액 증명원】

### 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】

【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】(2019. 7. 5. 개정)

발급번호	<b>소득금액증명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	처리기간	즉시
주소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	
(단위: 원)			
소득구분	원천징수의무자	소득금액	총징정세액
귀속연도	법인명(상호) 사업자등록번호	(과세대상금액)	
(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: ~ )			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			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
년 월 일			
세무서장(인)			
접수번호	* 소득금액내용 - 종합소득세 신고자 : 종합소득금액(결정소득금액) ※ 이월결산금액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-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: 당해연도 소득금액(사업소득금액) -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: 과세대상급여액 - 일용근로소득자 :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(과세소득) -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 :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-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: 당해연도 소득금액(연금소득금액)		
담당부서			
담당자			
연락처			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(1)] <개정 2020. 3. 13.> (8쪽 중 제1쪽)

관리번호	<b>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              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               (【 소득자 보편용 【 발행자 보편용 【 발행자 보고용)】</b>		거주구분 거주자/비거주자2 거주여부 거주여부코드 내·외국인 내국인1/외국인9 외국인종류외국인종류코드 예 1/부2 외국인소득 과세연도예연 예 1/부2 종교관원종사자 여부 예 1/부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,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, 종료회사2
정수	① 법인명(상호)	② 대표자(성명)	
의무자	③ 사업자등록번호	④ 주민등록번호	
소득자	⑤ 소재지(주소)	⑥ 종사업장 일련번호	
	⑦ 성명	⑧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
	⑨ 주소		
	구분	주(원)	총(천)
	⑩ 근무처명		
	⑪ 사업장등록번호		
	⑫ 근무기간		
	⑬ 감면기간		
	⑭ 급여		
	⑮ 상여		
	⑯ 인정상여		
	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		
	⑱ 1 우리사주조합인출금		
	⑲ 1 원천징수소득금액제한초과액		
	⑳ 4 직무발명보상금		
	㉑ 계		
	㉒ 국외근로	HKX	
	㉓ 1 아간근로수당	OKX	
	㉔ 2 출산·보육수	OKX	
	㉕ 4 연구보조비	HKX	
	㉖ 5		
	㉗ 6		
	㉘ 34		
	㉙ 수련보조수당	YZZ	
	㉚ 비과세소득계		
	㉛ 1 감면소득계		
	구분	㉜ 소득세	㉝ 지방소득세
	㉞ 결정세액		
	㉟ 73 중(천) 근무지	사업자	
	㊱ 74 납부	(결정세액란의	
	㊲ 세액	증빙	
	㊳ 세액	번호	
	㊴ 주(천)근무지		
	㊵ 납부특례세액		
	㊶ 차감정수세액	(72-73-74-75)	
	위의 원천징수액(근로소득)을 정히 영수(지급)합니다.		
	년 월 일		
	정수(보고)의무자		
	세무서장 귀하		

# 부동산 처분대금 등(자기자금)

☞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

## 【부동산 매매계약서】

## 【부동산 임대차계약서】

### 부동산 매매 계약서

이약은 당사자 쌍방은 이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.

**1. 부동산의 표시**

소재지					
토지	지목	대지면적	면적	㎡	
건물	구조종류	면적		㎡	

**2. 계약내용**  
제 1 조 (목적) 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다.

**3. 매매대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4. 계약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5. 임대보증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6. 중도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7. 잔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제 2 조 (소유권 이전)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이 부동산의 인도일은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로 한다.

제 3 조 (담보부담) 임대인은 이 부동산에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담보부담)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계약의 해제)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계약의 종료)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계약의 해제)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계약의 해제)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계약의 해제)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**특약사항**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은 매장이야 하여, 각각 1통씩 보관한다.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

매수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			
매수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매수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매수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매수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
###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

[ ] 전세 [ ] 월세

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이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.

**1. 부동산의 표시**

소재지					
토지	지목	대지면적	면적	㎡	
건물	구조종류	면적		㎡	

**2. 계약내용**  
제 1 조 (목적) 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다.

**3. 보증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4. 계약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5. 중도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6. 잔금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**7. 차임(월세)** 금 ( ) 원 ( ) 천 ( ) 백 ( ) 십 ( ) 원 ( ) 분 ( ) 초 ( ) 미 ( )

제 2 조 (전세) 임대인은 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여,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까지로 한다.

제 3 조 (월도면 및 전대 등)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의 월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·양전·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4 조 (계약의 해제)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 5 조 (계약의 종료)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.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, 잔액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.

제 6 조 (계약의 해제)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(중도금)이 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 7 조 (계약의 해제)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담보권,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및 소유권의 합의를 정하는 사항이 있거나, 제 3자가 기한 부당금의 이행을 위하여 압류, 유치권, 그 밖의 기타 부당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**특약사항**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은 매장이야 하여, 각각 1통씩 보관한다.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

임대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			
임대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임대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임대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임대인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	주 소	주인등록번호	면적	성명	성명

제출 증빙 서류	발급 방법
금융거래확인서	① 인터넷 बैं킹을 통한 발급 인터넷 बैं킹 접속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 ②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※ 주의 : 발급일 기준을 당일로 설정 시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/출금 거래 제한.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문의(OTP 및 보안카드 필요 등)
부채증명서	① 인터넷 बैं킹을 통한 발급 인터넷 बैं킹 접속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부채증명서 발급  ②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※ 주의 : 발급일 기준을 당일로 설정 시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/출금 거래 제한.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문의(OTP 및 보안카드 필요 등)
대출신청서	대출받기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

【금융거래확인서】

【부채증명서】

【대출신청서】

## 임대보증금(차입금)

↳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

### 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시】

부동산 임대차계약서					
[ ] 전세 [ ] 월세					
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					
1. 부동산의 표시					
소재지					
도	지	면적	㎡		
건	구조층도	면적	㎡		
임대할 부분				㎡	
2. 계약내용					
제 1 조 (목적) 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					
보증금	금	별정 (₩)			
계약금	금	별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증, 영수자( )			
중도금	금	별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			
잔금	금	별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.			
차입(월세)	금	별정은 (선불로·후불로) 매월	일에 지불한다.		
제 2 조 (종속기간) 임대인은 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,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.					
제 3 조 (용도변경 및 견대 등)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양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					
제 4 조 (계약의 해제) 임차인의 차입연체액이 2기의 차입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					
제 5 조 (계약의 종료)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.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,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.					
제 6 조 (계약의 해제)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)을 지불하기 전까지,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					
제 7 조 (재무불이행과 손해배상)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.					
<b>특약사항</b>					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·날인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은 매장하다 관인하여야 하며, 각각 1통씩 보관한다. 20년 _____월 _____일					
임 대 인	주 소				인
	주민등록번호	전 통	간	동	
	대리인 주소	주민등록번호	간	동	
임 차 인	주 소				인
	주민등록번호	전 통	간	동	
	대리인 주소	주민등록번호	간	동	

☞ 매수인 본인 소속 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 증명

### 【회사지원금 신청 양식 예시】

회 장	간 사	과 장	담 당	결 재

대 여 금 신 청 서 (  24회 상환 )  
 36회 상환 )  
 특 별 )

장 귀하

2020 .01. 03.

신 청 금 액 : 금	천만원정 (₩10,000,000)
정식발령일 : 2019 년 01월 01일	
<p>위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 . . . 규약을 준수하고 동 규약에 의하여 상환함은 물론 본인의 <u>제급여</u> 및 <u>탈퇴전별금</u> 등에서 일방적으로 회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차용합니다.</p> <p>대여 희망일 : 2020.01.30.</p> <p>입금 계좌 :</p> <p>보증방법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증보험가입(이율 연2.71%) <input type="checkbox"/> 무보증(이율 연3.71%)</p> <p>신청인(사용인) 소속 : 사번 : 성명 : (인)</p>	

※ 24회 상환(24개월) : 급여일에만 균등할부상환합니다.

※ 36회 상환(36개월) : 급여일에만 균등할부상환합니다.

※ 특 별(24개월) : 급여일에 이자만을 상환하며, 만기시 원금 일시상환합니다.



☞ 가족 또는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려 지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차용증 등으로 증명 가능

### 【차용증 양식 예시】

## 차 용 증

1. 원 금 : 금 이억원(금 ₩200,000,000원)
  2. 대 여 일 :
  3. 변 제 일 : 단, 양자간 합의에 의해 전액 또는 일부를 중도 변제하거나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4. 이 자 :
  5. 이자의 지급시기 : 대여일 익월(2020.1월)부터  
연 이자 상당액의
  6. 연체 이자 : 연 % , 연체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다
-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고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채 무 자 :  
주민등록번호 :  
전 화 번 호 :  
주 소 지 :

채 권 자 :  
주민등록번호 :  
전 화 번 호 :  
주 소 지 :

※ 위 양식은 예시임으로 일반적인 차용증과 다를 수 있음